

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

발급신청일				유효기간: ※ 아래 확인일부터 30일
장애인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)		사진 (3.5cm×4.5cm)
	영문명			
	주소			
주장애 및 장애 정도 ※ 기재여부 선택 가능			부장애 및 장애 정도 ※ 기재여부 선택 가능	
위 사람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/재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				
유의사항				
1. 이 확인서는 유효기간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. 이 확인서 발급 시 인적사항·사진 및 유효기간에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하며, 투명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경우, 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3. 이 확인서는 사용 후에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				